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나36313(본소), 2020나36320(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보상금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아람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계진

변론 종결 2020. 12. 1.

판결 선고 2021. 1. 1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17946(본소),  
2018가단71619(반소)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367,823원과 그중 42,567,823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2021.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5,945,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2,519,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20. 4. 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2,519,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20. 4. 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부대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67,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2행의 "C"를 "E"로, 3쪽 20행의 "갑 제20호증의2"를 "갑 제20호증의 2"로, 4쪽1행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를 "을 4호증의 2,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로 각고쳐 쓴다.

○ 4쪽 6행 "피고는 철거비용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미 10,500,000원을 지급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사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거비용 명목으로 위10,5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가한다.

○ 4쪽 11행부터 5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설계사 F이 피고에게 보낸 메일(을 4호증의 2)을 근거로 곡면부 벽돌 영롱쌓기 후면 마감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 원 · 피고 간 공사대금 지급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8. 2. 9. 피고에게 메일을 보낸 이후에 원 · 피고 사이에 2018. 8.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가공사 견적에 관한 메일이 오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 · 피고 사이에 곡면부 영롱쌓기 후면 마감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2018. 2. 9. 시점의 한 차례의 메일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와 목공사 그리고 추가공사 중 외부공사(담장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추가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에 관한 입증만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다투는 항목 중 견적서만 있을 뿐 지출내역이 없거나(전기공사: 원고 청구 금액 7,107,400원)원고 청구금액과 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목공사: 원고 청구금액 9,026,000원,인정되는 지출내역 2,802,650원)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다투지 않는 다른 항목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비용지출이 인정되고 피고가 다투는 부분은 전체 추가공사대금 114,998,260원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비용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대금 잔액99,498,260원(= 114,998,260원 - 10,5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소결

아래 3.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56,130,437원(=39,146,000원 + 12,784,437원 + 4,200,000원)은 피고의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객실방화문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채권 43,367,823원(= 99,498,260원 - 56,130,437원)과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42,567,82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9.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9.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쪽 12행, 10쪽 1~2행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9쪽 2행의 "순번 2"를 "순번 3"로 각 고쳐 쓴다.

10쪽 10행, 11행의 "을 제23 내지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24 내지 29,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10쪽 하8행부터 12쪽 하4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객실방화문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내역 중 객실 방화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로 계약 내용과 달리 오시공함에 따라 피고에게 4,2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31,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피고는객실 방화문에 관하여 구로 철판의 질감을 살리기 위하여 투명칠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객실방화문 중 3개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로 컬러도장을 할 수밖에 없게된 사실, 위와 같이 잘못 시공된 객실방화문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에 4,2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4,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상계항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객실방화문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객실방화문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56,130,437원(=

39,146,000원 + 12,784,437원 + 4,200,000원)이 있고, 피고의 위 각 채권이 공사가 완료된

2018. 7. 9. 이행기에 도달했으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9. 1. 18.자준비서면과 2020. 8. 28.자 준비서면이 각 당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56,130,437원과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7. 9.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지체상금은 지급시기가 추가공사대금과 같다는 점에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각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객실방화문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김용한, 판사 노태헌